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예지  
김상훈 · 김종양 · 서천호  
박형수 · 최보운 · 박충권  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,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조 및 제6조).



#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5년마다 수립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수립하고”를 “매년 수립하고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조(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 지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.



